GOLF회원권 매매계약서

● **회원권명:** ● **회원번호:**

● **회원성명:** ● **회원구분: 개인/ 법인**

상기 골프회원권을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매매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(체결)한다.

제1조 대금지급의 방법

양수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양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한다.

대금총액: 일금 원정 (₩)

계 약 금: 일금 정을 체결 당시 지급

잔 금: 일금 정을 년 월 일 지급함.

제2조 명의개서의 방법, 절차

제1항: 양도인은 잔금 수령 시 양수인에게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명의변경 서류일체를 교부하여야 하며 명의개서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.

제2항: 명의개서비는 양수인 부담이다.

제3조 양도, 양수인의 책임과 한계

제1항: 양수도시 압류등과 같은 문제와 이로 인한 계약파기 등 제반 문제에 관한 책임은 명의개서일 (*명의개서비 입금일) 기준으로 판단한다. 즉, 명의개서일 이전의 원인제공 및 발생사실에 대하여는 양도인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이후에 대하여는 양수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.

제2항: 양도서류의 미비, 회원권의 압류 등 하자로 인하여 명의개서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은 당연히 무효가 되며, 이때 양수인 또는 대행인의 환불요구에 대하여 양도인은 지체 없이 전액을 환불하여야 한다.

제3항: 회사는 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회원권의 하자, 거래절차상의 문제로 인한 계약 파기 등 기타 본 계약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.

제4항: 양도인과 양수인은 회원권, 매매대금의 수수,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관련 서류 일체의 수수에 관한 대리권을 입회인에게 위임한다.

제4조 기 타

제1항: 회원권 양도일 이전에 발생한 공과금 및 관리비 등의 체납액일체는 양도인의 부담이다.

제2항: 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회원권 업계의 일반관행에 따라 행한다.

년 월 일

양 도 인 주 소:

생 년 월 일:

성 명: (인)

양 수 인 주 소:

생 년 월 일:

성 명: (인)

phoenix cc